

	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	문서번호		5-1-38	
		제정일		2017. 06. 20.	
		개정일			
		페이지	1/2	관리 부서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내에 설치되는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운영범위) 이 규정은 정관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에 있는 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를 제외한 본교 내에서 설치,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에 적용된다.

제3조(설치)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기능,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무처에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교무처장은 설치요청사항을 교무위원회에 회부, 설치 여부를 심사한 후, 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교무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는 날로부터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필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결원에 의한 신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 및 의결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써 성립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, 날인하여야 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.

제9조(해산) ① 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무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한시적으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자연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	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		문서번호	5-1-38	
			제정일	2017. 06. 20.	
			개정일		
			페이지	2/2	관리 부서 교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